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2
----------	-----

발의연월일 : 2009.12. 8.
발 의 자 : 김 용 재 의원
(찬성자 7인)

제안이유

가. 빌딩이나 공원 등에 미술장식 등을 할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일부 질이 낮은 미술장식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보호·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를 권장함.(안 제18조제3항)
- 나.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 다. 지역문화예술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 설치시 인천지역활동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 라. 시장은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안 제40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 설치시 인천지역활동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시장은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8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u></p> <p>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p> <p>⑤ <u>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 설치시 인천지역활동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40조(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u>시장은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u></p>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 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취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